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[이대곤 의원 대표발의]

의안 번호	2022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1. 11. 22.

발의의원 : 이대곤 의원, 신동윤 의원

1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인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2022. 1. 13. 시행)에 따라
조례 근거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제1조(목적)의 세부근거 개정 : 「지방자치법」 제62조 → 제71조
- 나. 특별위원회 존속기한 자율화 및 권고안 반영(안 제2조)

3. 개정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- 「지방자치법」 제62조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(목적) 중 “제62조”를 “제71조”로 한다.

제2조(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)제2항 중 “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”를 “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”로 하고, 제4항을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6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제71조----- ----- ----- ---
제2조(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) ① (생략) ② 의회는 의원의 <u>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</u>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 ③ (생략)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. ⑤ (생략)	제2조(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</u> -----. ③ (현행과 같음) ④ (삭제) ⑤ (현행과 같음)

참고**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**☐ **지방자치법(시행 2022.1.13.) (2021.1.12., 전부개정)**

제71조(위원회에 관한 조례)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